

공공개발 관련 갈등예방을 위한 법률정비방안 보고 [요약]

1. 개요

□ 배경 및 필요성

- 빈발하는 공공갈등의 예방을 위하여 참여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'갈등 관리시스템 구축방안'의 하나로 추진
- 개발사업 관련 법률 중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**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제도를 개선함으로써**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

□ 추진경과

- '05. 1월, 지속위에 법제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팀을 구성,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
- 관련 5개부처(건교부·해수부·환경부·산자부·행자부)와 협의를 거쳐 수용 가능한 10개 법률을 정비과제로 선정

2. 개선과제 주요내용

① 이해관계자 사전 의견수렴 확대 (댐건설법 등 개정)

- 댐건설 등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미흡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**갈등 유발**
- ⇒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역주민,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참여 절차 보완 (댐건설법, 공유수면매립법)
- ⇒ 폐기물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선정 기준 보완 및 입지타당성조사 공고 방법 다양화(폐기물처리시설축진법)
- *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입('05. 6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)으로 여타 주요사업, 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자 사전 의견수렴이 의무화되어 사전단계의 갈등 예방체계가 한층 강화됨

② 해상경계관련 근거법률 제정 등 (지방자치법 개정 등)

- 그간 근거법률이 없어 해상경계 관할을 둘러싸고 자치단체간 분쟁이 빈발 (전국의 분쟁 20건), 향후 관련 갈등이 증가될 전망
- ⇒ 행정구역에 바다를 포함하도록 명시규정을 신설(지방자치법 개정)하고, 해상경계 기준, 절차 등을 정한 **별도 법률 마련**(해상경계특별법 제정)
- * 평택-당진간 해상경계 분쟁 관련, 해상에도 행정구역이 존재(지리원 지형도 기준)한다 는 현재 판결(04.9.)이후 05.6월부터 행자부가 T/F 구성, 본격 추진중
-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던 민법상 관행수리권의 경우 하천법의 관리를 받지 못해 **실태파악 미흡**, 체계적 관리 애로 및 갈등소지 상존
- ⇒ 관행수리권에 대한 사전 신고를 받아 하천법에서 관리(하천법 개정)

③ 공유수면 매립·면허제도의 개선 (공유수면매립법 개정)

- '산업입지법'등 특별법으로 의제 처리되는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사후관리장치 등 미흡으로 갈등소지
- ⇒ 특별법에 의한 매립의 경우에도 중대한 사정변경시 해수부장관의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 (매립기본계획, 매립 면허에 대한 변경요청등)
- 매립기본계획 수립시 수요기관의 반영 요청에만 의존하던 것을 기초수요조사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공유수면 매립 유도

④ '연안 통합관리계획'의 실효성 확보 (연안관리법 개정)

- 지자체의 참여 미흡(연안관리 지역계획 대상 80개 지자체중 17개 수립) 등으로 통합적 연안관리 실효성 저하
- ⇒ 지자체별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을 의무화, 복잡·다양해지는 연안 이용 관련 갈등 사전예방
- ⇒ '연안관리지역계획'에서 해양수산부 지침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는 연안의 '용도구역제' 안정적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

⑤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간의 연계 강화 (환경정책기본법 개정)

-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 고려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사회적 갈등 예방 어려움
- ↳ 주요 개발관련 사업·계획에 대한 '사전환경검토서' 작성시 환경계획에 부합되게 작성하도록 관련기준 보완(환경부, 시행령 개정중)
- ↳ 국가계획에 개발과 보전이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국토종합계획과 환경계획의 내용 및 수립주기(10년→20년) 체계적으로 연계

⑥ 기타 사항(산업입지법, 전원개발촉진법 개정)

- 산업단지 및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 이후 사정변경으로 '철회' 사유 발생시 이를 적용하기 위한 명시적 근거가 미비
- ↳ '승인' '변경' 절차에 준하여 '철회'의 근거를 명문화
- * 그간 관계부처에는 '변경' 규정을 '철회'의 근거로 확대해석

3. 향후 조치계획

- 제도개선 과제의 내용을 관련 부처에서 이행토록 조치
 - 법률 소관부처에서 부처협의 등을 거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
- 추진일정은 과제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
 - 단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'06~'07년중 개선
 - 중·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'08년이후 추진
- * 세부추진일정 : 별첨

[첨 부]

과제별 추진일정

주요 추진 과제	개(제)정 법률	'06	'07	'08 이후	주관부처
1.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확대 등 - 댐건설계획 주민 의견수렴 -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의견수렴 -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주민의견수렴 - 전원개발계획, 산업단지 지정 승인 취소 근거 신설	댐 건설법		■		건설교통부
	공유수면매립법	■	■		해양수산부
	폐기물시설축진법시행령	■	■		환경부
	전원개발법 산업입지법	■	■		산자부, 건교부
2. 해상경계갈등해소 및 관행수리권 개선 - 관행수리권을 허가수리권으로 편입 - 댐 저수이용권 개선 - 자치단체 해상경계 관련 근거 마련	하천법	■	■		건설교통부
	댐건설법	■	■		건설교통부
	지방자치법	■			행정자치부
	해상경계 법률(가칭)	■	■	■	행정자치부
3. 개발과 보전 관련 갈등예방 제도개선 ○ 공유수면 매립·면허제도 개선 등 ○ 연안의 통합관리계획 실효성 확보 ○ 국토계획·환경계획간 연계체계 구축 - 국가환경계획 수립주기 조정 - 사전환경성 검토시 연계 강화	공유수면매립법	■	■		해양수산부
	연안관리법	■	■		해양수산부
	환경정책기본법 동법 시행령	■		■	환경부

**공공개발관련 갈등 예방을 위한
법률정비 방안 (본보고서)**

2006. 4

< 목 차 >

I. <u>추진배경 및 경과</u>	1
II. <u>개선과제 도출</u>	2
III. <u>개선과제 주요내용</u>	4
1. <u>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확대</u>	4
2. <u>해상경계관련 갈등예방 및 관행수리권 개선</u>	6
3. <u>공유수면 매립제도의 개선 등</u>	8
4. <u>연안통합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</u>	10
5. <u>국토계획과 환경계획간 연계체제의 구축</u>	12
IV. <u>추진일정</u>	14
[붙임1]: <u>소관 법률별 정비방안</u>	15
1. <u>하천법</u>	16
2. <u>담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</u>	17
3. <u>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</u>	18
4. <u>연안관리법</u>	19
5. <u>공유수면매립법</u>	21
6. <u>환경정책기본법</u>	23
7. <u>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</u>	24
8. <u>전원개발촉진법</u>	25
9. <u>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해상경계에관한법률(가칭)</u>	26

I 추진배경 및 경과

□ 배경 및 필요성

- 우리 사회에서 빈발하는 공공갈등의 예방을 위하여 참여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'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'의 하나로 추진
 - * 지난 '04. 8월, 지속위에서 '갈등관련 법·제도 개선지침'을 마련, 관계부처를 통해 자체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
 - 관계부처별로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등 정비를 추진
(예: 건교부, 24개 중장기계획 환경성 검토강화 등)
- '갈등관리법' 제정과 병행하여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개별 공공개발 관련 주요법률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도출하여 개선 필요

□ 기본연구 진행

- 지속가능위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을 주축으로 관련연구기관의 협력하에 개선과제 발굴 등 연구를 진행하여,
 - 공공개발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갈등예방을 위한 법률정비(안)을 마련('05. 1~6월)

□ 보고서 작성경위

- 연구팀에서 마련한 개선과제에 대하여 관계부처 1차 의견 수렴 및 조정('05. 7~8월)
-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한 개선과제에 대한 2차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보고서 마련('05. 9~'06.2월)
 - * 최종 개선정비방안에 대한 보고를 통하여 '정비방안' 확정('05.4)

II 개선과제 도출 및 추진방향

1. 개선과제의 도출 및 추진방향

□ 과제발굴 방향

- 공공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법률 중심으로 갈등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법제의 개선 보완방안 도출
 - 정책입안과 결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참여 보장절차 확대
 -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, 정보의 공유 확대
 - 수범자의 입장에 선 법제도 수립과 엄격한 법 집행 등

□ 과제발굴 개요

- 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절차 보완
 - 댐건설 기본계획,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단계의 주민 의견수렴 강화
 -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선정 등
- ② 해상경계관련 갈등해소 및 관행수리권 개선
 -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 갈등예방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
 - 유수·저수에 대한 허가수리권과 관행수리권의 조화
- ③ 공유수면 매립제도 개선(사정변경에 의한 시정조치)
 - 특별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사후관리 보완
- ④ 연안 통합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
 - 연안육역과 해역의 범위 설정기준을 탄력적으로 보완
 - 연안통합관리계획에 용도구역 도입 등
- 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간 연계체계 구축
 -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수립시에 상호고려
 -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한 계획간 연계의 유도

□ 부처별 정비대상 법률: 총 10개 법률

소관부처	개선대상 법률
건설교통부 (3개)	- 하천법 -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(댐건설법) -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(산업입지법)
해양수산부 (2개)	- 연안관리법 - 공유수면매립법
환경부 (2개)	- 환경정책기본법 -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(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)
산업자원부 (1개)	- 전원개발촉진법
행정자치부 (2개)	- 지방자치법 - 지방자치단체해상경계에관한법률(가칭) 제정 병행

□ 개선 추진방향

- 개선과제 추진
 - 도출된 개선 과제는 개선이 필요한 의제로로서, 소관부처가 세부계획을 수립, 관련부처 추가협의 등을 거쳐 추진하도록 관리
- 추진일정은 과제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
 - 개선이 시급하고 사회적인 공감대 뒷받침 되어 단기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'06~'07년중 개정 추진
 - 개선 필요성은 있지만 다른 과제와 연계되어 검토할 과제는 중·장기적으로 조치

* 세부추진일정 : 별첨

Ⅲ 개선과제별 주요 내용

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확대

□ 현 황

- 댐건설에 필요한 일정지역(수몰지 포함)을 '댐건설예정지역'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(댐건설법 제5조)
- '댐건설기본계획' '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' 수립 절차
 - 댐건설 기본계획 수립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(댐건설법 제7조)
 - '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' 수립시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시도지사 의견(시군구·의회 포함) 수렴(공유수면매립법 제4조)
-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'입지선정위원회'를 구성·운영(폐촉법 제9조)

※ 관련법령

- 댐건설법 : 제5조(댐예정지 지정), 제7조(기본계획 수립)
- 공유수면매립법 : 제4조(매립기본계획의 수립)
-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: 제9조제3항 :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(주민대표 참가)
- 전원개발촉진법 : 제5조(실시계획의 승인)

□ 문제점

- 댐 건설기본계획 이전단계의 후보지에 불과한 '댐 건설 예정지'를 둘러싸고 행위제한 등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 유발
- 댐건설 기본계획 수립,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직접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 규정 미흡
-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시 참가하는 주민대표의 적격성 시비 등으로 실질적인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음(화성시 광역소각장 입지갈등)
- 전원개발계획, 산업단지 지정 후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철회(취소)할 수 있는 법적인 명시규정이 애매하게 규정
 - * 그간 관계부처에는 '변경' 규정을 '철회' 의 근거로 확대해석

□ 개선방안

< 개선방향 >

- 댐 건설기본계획 수립 등 수립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절차 확대하되 절차나 기준이 지나치게 경직되지 않도록 사업별 실정을 감안하여 도입
- 전원개발 실시계획, 산업단지지정 단계에서 변화된 사정 반영 근거 법률 명확화

< 입법대안 > : 댐건설법, 공유수면매립법, 폐촉법 등 개정

1) 댐건설법 개정

- 댐 건설 예정지역 지정 제도의 폐지(법제5조)
 - 댐의 입지는 기본계획(법 제7조) 단계에서 결정
 - *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(부칙)에 기반영(’06.6 시행예정)
- 주민 등 이해관계자 참여절차의 보완
 - 기본계획(법 제7조) 수립 단계에서 이해관계 주민참가 절차를 도입

2) 공유수면매립법 개정

- ‘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’ 수립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 반영
 - * 기본계획 반영요청 등에 계획수립시 주민, 환경단체의 의견수렴절차 보완

3) 폐기물시설설치촉진법 개정

-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할 주민대표의 선정기준 마련
 - * 입지후보지 주민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
- 입지타당성조사 공고방법의 다양화
 - * 주민들이 쉽게 알수 있도록 보완(예: 인터넷 공고 등도 고려)

4) 전원개발촉진법 개정

- 전원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변경절차에 준하여 철회의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("계획변경"에 "사업철회(취소)를 포함" 하도록 개정)

5) 산업입지개발법 개정

- 산업단지 지정 승인사항에 변경절차에 준하여 철회(취소)의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("계획변경"에 "사업철회(취소)를 포함" 하도록 개정)

② 해상경계 관련 갈등예방 및 관행수리권 개선

□ 현 황

- 지방자치법(제4조,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구역)에는 육상에서의 행정구역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만 해상에서의 경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
- 하천법(제3조)에는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원칙을 선언, 하천을 흐르는 유수의 소유권에 대한 적극적인 규정이 없고, 댐건설법에서도 이러한 정신을 수용

※ 관련법령

- 지방자치법 :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
- 하천법 : 제3조(하천의 귀속, 국유), 제20조(하천유지유량)
- 댐건설법 : 제16조(댐 관리의 기본원칙), 제24조(댐 사용권의 설정)

□ 문제점

- 연안에서의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어 자치단체간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과 갈등이 빈발
 - 사례: 아산만을 둘러싼 평택시와 당진군의 분쟁 등 다수 발생
 - * 분쟁건수 : 총 20건(시도간 9건, 시군구간 11건)
 - 향후 해저자원 등 자원활용과 관련하여 자치단체간 유사한 분쟁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
 - * 평택-당진간 해상경계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과,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도를 해상경계의 기준으로 한다는 판결(’04.9.23)
- 1961년 하천법 제정시 하천을 흐르는 유수를 국유로 관리하면서, 민법상 인정되는 관행수리권을 제도화 하지 못함으로써 이에 대한 실효적 관리 및 관리체계가 미흡, 갈등 소지 상존
 - 댐건설법에서도 동일한 실정

□ 개선방안

< 개선방향 >

- 해상경계를 합리적으로 획정하여 지자체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자체간 해상경계 획정과 관련한 법령을 정비
- 하천법상의 법정 수리권과 관행수리권을 조화시켜 민법에 의한 유수 사용권에 대한 배려를 강화

< 입법대안 > : 지방자치법, 하천법, 댐건설법 등 개정

1) 지방자치법 개정

-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바다를 포함하도록 명시규정 신설
-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설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, 절차 등 해상경계에 관해서는 개별법에서 규정한다는 사항 신설

2) 「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에 관한 법률(가칭)」 제정 추진

- 해상경계 설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, 해상경계 표시방법 및 해상경계 획정기구 설치·운영방안 마련
- 해상경계선 확정 후 해상경계변경 절차 및 분쟁조정방안 등 마련

※ 해상경계선(좌표값) 확정에 따른 관계법령 보완

- 확정된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선에 대한 좌표값(위·경도로 표시)을 해상경계법률 또는 시행령에 명시

3) 하천법 개정

- 민법상 유수사용권(관행수리권)을 하천법상 수리권 체계로 흡수하여물관리 정책체계의 틀 속에서 합리적인 유수총량 판단 등 허가수리권과 동일하게 보호 관리하는 방안으로 개선

4) 댐건설법 개정

- 저수이용권의 배타성 완화(하천법 개정과 연계)
 - 민법상의 유수사용권을 댐건설법의 저수이용권과 연계
 - 댐건설법상의 저수이용권을 하천법의 유수사용권과 연계

③ 공유수면매립 면허제도의 개선

- 특별법에 의한 매립의 사후관리 보완

□ 현 황

-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의 전체기능 및 용도,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이용·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
-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매립목적을 명시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함
 - * 면허권자 : 지정항만내(해수부장관), 기타지역(시·도지사), 복합지역(해수부장관)
- 해수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기본계획, 매립면허와 관련하여 사후관리 감독을 시행할 수 있음
 - 매립기본계획 수립 고시이후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거쳐 변경, 폐지(법제8조)
 -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전에 공유수면의 상황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공익상 특히 필요시 면허 취소·변경 가능(매립법 제32조)
- ※ 관련법령
 - 공유수면매립법
 - * 제4조(매립기본계획 수립), 제5조(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), 제8조(매립기본계획 변경, 폐지), 제9조(매립면허), 제32조(직권에 의한 매립면허의 변경·취소)
 - 산업입지법
 - * 제21조 (실시계획의 승인시 매립면허를 의제처리)
 - * 제23조(매립기본계획 의제)

□ 문제점

- 특별법 등에 의하여 산업단지, 항만 등 선점식 매립이 남발되고,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갈등이 빈발하고 있음
 - * 특별법에 의한 매립 의제처리
 - 매립면허 의제(50개 법률) : 산업입지법 등
 - 매립기본계획 의제(7개 법률) : 산업법, 유통단지개발촉진법, 소하천정비법,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지원법, 항만법, 신항만촉진법, 어항법

- 특별법에 의거 의제 처리된 공유수면매립에 대하여는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(폐지),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취소(변경) 등 관리 감독권 행사가 불가능
 - 매립면허 후 사정변경으로 인한 실시계획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매립기본계획 및 매립면허가 계속 유지 됨으로써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·이용에 애로
-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 이행절차 미흡
 - 기본계획 수립시 매립 수요기관의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주로 의존하여 추진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 곤란
 - 매립면허 이후 토지이용계획 등 실태에 대한 관리가 미흡

□ 개선방안

< 개선방향 >

- 매립기본계획 수립, 매립면허후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특별법에 의해 의제 처리된 매립에 대한 사후조치 강화
- 매립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·이행절차를 보다 강화하여 무분별한 매립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

< 입법대안 > : 공유수면매립법 개정

- '산업입지법'등 특별법으로 의제된 매립의 경우에도 매립예정지 주변여건·해면이용상황 등 중대한 사정변경시 일반매립에 준하여 해수부장관의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절차를 보완
- 매립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·이행절차의 보강
 - 해수부장관이 매립기본계획 수립시 기초수요(실태)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보완
 - * 매립지 현황, 해양환경·생태계 현황·해양환경·토지이용계획 등
 - 매립 면허이후 주기적으로 허가 받은 내용 토지이용계획서 이행내용을 조 파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

④ 연안 통합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

□ 현 황

- 연안의 생태적·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'99. 2. 연안관리법을 제정, '연안통합관리계획'을 수립·시행
 - * 연안통합관리계획 - 연안관리지역계획 - 연안정비계획 수립·고시
 - 연안의 공간적 범위 설정(연안관리법 법제2조)
 - 연안은 연안해역 및 연안육역으로 구분
 - * 연안육역 : 해역 육지측 한계로부터 500m(항만,산업단지등은 1km)
 - 연안관리지역계획에는 '용도구역제'와 유사한 기능별 연안구역 설정
 - * 보전·이용·개발적 가치에 따라 '절대보전연안', '준보전연안', '이용연안', '개발조정연안', '개발유도연안'으로 구분
 - 타 법률에 의한 계획 등과의 관계(연안관리법 제11조)
 -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연안계획을 수립하되, 예외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변경요청 가능
- ※ 관련법령 : 연안관리법
- * 제2조 : 정의(연안해역, 육역의 범위)
 - * 제7조 :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, 제8조 :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
 - * 제10조 : 연안통합계획등의 변경
 - * 제11조 : 다른 법률이 규정한 범위(용도지역)내에서 관리

□ 문제점

- 연안통합관리계획은 토지 중심의 국토계획의 우월성에 근거하여 국토계획→도시계획→연안관리계획 구조하의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결정구조
 - 타 법률에서 정한 계획 범위 내에서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규범력이 미약
- 연안육역 범위의 육지측 한계 설정 기준이 획일적으로 정하여 있어 육역의 연결성 혹은 통합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
 - * 연안육역의 범위 500m~1 km로 획정

- 연안공간·자원관리를 위한 실체적 ‘관리수단’이 부족
 - * 연안통합(지역)관리계획의 수립주기, 지역계획에서 활용하고 있는 용도구역제의 근거,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역계획 수립이 임의규정으로 규정

□ 개선방안

< 개선방향 >

- 연안관리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적인 관리기능 확대
- 유효한 연안관리를 위한 실체적인 이행 수단을 보완하고 실체적 관리수단을 확대

< 입법대안 > : 연안관리법 개정

- 연안육역 및 해역관리범위를 단력적으로 보완(법제2조)
 - 연안육역의 범위를 현행기준(500~1km)을 유지하되, 연안의 지형특성,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해양환경에 중대하고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곳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보완
 - * 해양오염방지법의 환경보전해역, 특별관리해역 등을 종합 고려
- 연안통합관리계획과 지역계획의 실체적 관리수단 확보
 -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주기 명시(예: 5년, 실태조사주기와 일치)
 - 연안지역계획에서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는 연안의 ‘용도구역’ 제도를 연안관리법에 포함하여 근거 마련
 - * 연안지역계획에서 도입 중인 성과를 토대로 타 계획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반영
 - 현재 임의규정인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지역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사정변경시 지역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보완

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간 연계체계의 구축

□ 현 황

- 국토기본법,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있음
 - 체계적인 국토관리를 위하여 「국토종합계획」 수립(건설교통부)
 - 국토환경 보전을 위하여 「국가환경종합계획」 수립(환경부)
- 국토종합계획(건교부)과 국가환경종합계획(환경부)간 연계성
 - 두 계획간 상호 고려(대화)하는 시스템의 결여
 - 특히, 계획기간(20년↔10년) 및 시작시기와 종료시기 상이
- 양 계획간 대화체계 구축에 사전환경성 검토 시스템 활용 가능성
 - '06.6월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상위의 행정계획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확대하여 포함하도록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
 - * 05.5.31공포, 시행령개정 추진중
 - 사전환경성 검토시 ‘환경계획’을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필요

※ 관련법령

- 국토기본법 : 제5조(환경친화적 국토관리)
- 환경정책기본법 : 제14조의5(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·사업의 국가환경종합계획등 고려), 제25조(사전환경성 검토협약)

□ 문제점

- 환경정책기본법은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지만(법제14조의5)
 - 국토기본법이 별도의 환경보전 항목(법제5조)들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환경계획의 반영 등 연계가 미흡한 실정
- 국토종합계획(20년)과 국가환경종합계획(10년)의 수립주기 및 그 始期·終期가 달라 계획간의 고려 및 영향의 평가가 곤란
-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활용한 계획간 대화 기반 미흡
 - 사전환경성 검토시 개발계획등을 작성·검토할 수 있는 기준이 미흡

□ 개선방안

< 개선방향 >

- 관련 계획간의 특화를 통해 국토계획은 사업자 기능에, 환경계획은 감시자 기능에 충실
-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등을 매개로 계획간 대화를 통해 각 계획의 입안·수립·이행에서 상호 고려
 - * 외국 입법례 : 독일 자연환경보전법과 건설법은 경관계획을 통하여 대화 (독일 「경관계획」은 실제 우리의 「환경계획」에 해당)

< 입법대안 > : 환경정책기본법 등의 개정

- 관련계획들의 계획 「기간」의 조정
 -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기간연장 : 10년 → 20년
 -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의 시기·종기를 조정
- 사전환경성 검토를 통한 계획간 대화체계 구축
 -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에 개발관련 계획을 포함하여, 사전환경성 검토시 「환경계획 고려」 내용을 검토('05.5.31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후속 조치)
-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기준 보완
 - '사전환경성 검토서' 작성시 환경계획과의 부합성 여부를 고려하도록 관련 작성기준을 보완(시행령·고시 등)

IV 추진일정

주요 추진 과제	개(제)정 법률	'06	'07	'08 이후	주관부처
1.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확대 등 - 댐건설계획 주민 의견수렴 -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의견수렴 -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주민의견수렴 - 전원개발계획, 산업단지지정 승인 취소근거 신설	댐 건설법		■		건설교통부
	공유수면매립법	■	■		해양수산부
	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주민의견수렴	■	■		환경부
	전원개발법, 산업단지지정 승인 취소근거 신설	■	■		산자부, 건교부
2. 해상경계갈등해소 및 관행수리권 개선 - 관행수리권을 허가수리권으로 편입 - 댐 저수이용권 개선 - 자치단체 해상경계 관련 근거 마련	하천법	■	■		건설교통부
	댐건설법	■	■		건설교통부
	지방자치법	■			행정자치부
	해상경계 법률(가칭)	■	■	■	행정자치부
3. 개발과 보전 관련 갈등예방 제도개선 ○ 공유수면 매립·면허제도 개선 등 ○ 연안의 통합관리계획 실효성 확보 ○ 국토계획·환경계획간 연계체계 구축 - 국가환경계획 수립주기 조정 - 사전환경성 검토시 연계 강화	공유수면매립법	■	■		해양수산부
	연안관리법	■	■		해양수산부
	환경정책기본법 동법 시행령	■	■	■	환경부

갈등예방을 위한 법률정비방안

붙임1 소관법률별 정비방안 내용

1. 하천법(건설교통부)
2.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(건설교통부)
3.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(건설교통부)
4. 연안관리법(해양수산부)
5. 공유수면 매립법(해양수산부)
6. 환경정책기본법(환경부)
7.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(환경부)
8. 전원개발촉진법(산업자원부)
9.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에 관한 법률(가칭,제정)(행정자치부)

1. 하천법(건설교통부/하천계획팀)

현황 및 문제점	개선 정비방안	추진시기
<p>□ 관행수리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</p> <p>○ 수리권 제도는 1961년 하천법 제정 전후를 기준으로 그간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던 민법상 유수사용권(관행수리권)과 하천법상 허가수리권으로 구분하여 존재</p> <p>※ 하천법 제정시 민법상 관행수리권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못함.</p> <p>○ 이로 인하여, 각 수리권자간의 관계, 우선순위 등이 모호하고, 관행수리권 사용현황도 파악되지 않는 등 공공용수의 이용 및 관리에 애로</p>	<p>① 민법상 유수사용권을 긍정하고 하천법상 허가수리권과 통합 관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민법상 공유하천 유수사용권을 하천법에 수용하여 신고제로 전환 - 민법상 유수사용권을 존재하는 권리로 인정하되, 하천법상 허가수리권 체계로 흡수하여 통합관리 하는 방안으로 개선 (건교부 수정의견 반영) <p>② 유수사용의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민법상 유수사용권(관행수리권)을 하천법상 허가수리권 체계로 흡수하여 하천법상 물관리 정책체제의 큰 틀 속에서 합리적인 유수 총량 판단 등 허가수리권과 동일하게 보호 관리하는 방안으로 개선 (건설교통부 수정의견 반영) <p>* 건교부에서 하천법 개정 추진중 (제안후 협의과정에서 이미 반영)</p>	<p>2006 ~2007년</p> <p>2006 ~2007년</p>

2.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(건설교통부/수자원개발팀)

현황 및 문제점	개선 정비방안	추진시기
○ 법제5조에 의거, 댐 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하고 있어, 댐건설기본계획 이전 단계에서, 후보지에 불과한 댐 건설 예정지역을 둘러싼 갈등 발생	① 댐 건설 예정지역 지정 제도의 폐지 ○ 제5조(댐 건설 예정지역의 지정등)를 삭제 - 댐 입지는 댐 건설 기본계획(제7조) 수립 단계에서 결정하도록 개선 * 정비제안에 대하여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과 연계하여 개정완료('05.12.7 공포, '06.6시행)	2005 (기개정)
○ 법제7조에 의거, 댐건설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하여 집행단계에 심각한 갈등 발생	② 주민 등 이해관계자 참여절차의 보완 ○ 기본계획(법제7조) 수립 단계에서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참가 절차를 명시적으로 도입 - 계획확정 이전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의 갈등을 미리 예방	2007
○ 물에 대한 특허권자의 독점권을 규정한 하천법의 정신을 승계 - 유수와 저수의 분배와 이용에 관한 원칙 부재 - 민법상의 상린관계에 대한 고려 부재 ○ 댐 사용권자가 저수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행사 - 하천법은 유수 사용권자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 - 댐건설법의 저수 사용권자에게도 동일한 지위를 추정	③ 저수이용권의 배타성 완화 - 민법상의 유수사용권(관행수리권)을 댐건설법의 저수이용권과 연계 - 댐건설법상의 저수이용권을 하천법의 유수사용권과 연계 * 건교부 의견 : 관행수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댐 저수이용권의 배타성을 완화시켜 일정 범위 내에서 민법상 유수사용권(관행수리권)을 인정하는 방안(하천법의 개선과 연계하여 추진)	2007

3.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(건설교통부/입지계획팀)

현황 및 문제점	개선 정비방안	추진시기
○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- 사업시행자는 국가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, 지방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,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 등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. 변경의 경우에도 같음(제17조~제19조) - 승인·변경절차는 있으나 폐지(철회) 근거는 명시적으로 미규정 ○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실시계획이 더 이상 존치될 수 없을 경우에 이를 폐지(철회)할 근거 규정 미비 * 현행, 변경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필요	①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철회 절차 명시 ○ ‘산업입지법’에서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사항에 대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전면적인 철회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절차를 법률에 명시(법제17조~19조) * 법제17조(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),법제18조(지방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),법제19조(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)제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 : "…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…" → "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·철회하고자 할 때에도…"	2006 *향후법개정과연계

4. 연안관리법(해양수산부/연안계획과)

현황 및 문제점	개선 정비방안	추진시기
<p>□ 연안육역의 범위 설정기준 미흡</p> <p>○ 연안육역 범위 육측한계 설정 기준이 일률적으로 500m~1km로 되어 연안 유역중 해양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면서도 육역범위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</p> <p>* 해양오염방지법은 '환경관리해역'을 설정하면서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해양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포함</p>	<p>① 연안육역의 범위설정기준 보완</p> <p>○ 연안육역(제2조)의 범위 설정기준 보완</p> <p>- 연안육역의 범위는 현행기준(500~1km)을 유지하되, 연안의 지형특성,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해양환경에 중대하고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곳을 포함할 수 있도록 보완</p> <p>* 해수부 의견 : 해양오염방지법의 환경보전해역, 특별관리해역 등을 종합 고려 보완</p>	<p>2006 ~2007</p>
<p>□ 연안공간·자원관리를 위한 실제적 '관리수단'이 부족</p> <p>○ 연안통합(지역)관리계획의 수립 주기 미규정</p>	<p>② 연안통합관리계획과 지역계획의 실제적 관리수단 확보</p> <p>○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주기를 명시 (예: 5년 - 연안실태조사 주기 고려)</p> <p>* 정기연안실태조사결과 활용,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립·반영, 변화하는 여건을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</p>	<p>2006 ~2007</p>
<p>○ 연안관리지역계획에서는 해양수산부의 '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지침'에 의하여 연안 용도구역을 지정 운용하고 있으나 연안관리법에 근거규정이 없음</p>	<p>○ 연안육역 및 해역의 '용도구역' 제 도입</p> <p>- 현재 연안지역계획에서 활용하고 있는 '용도구역제'를 연안관리법에 포함하여 근거마련</p> <p>* 다양·복잡해지는 연안이용 갈등을 사전예방을 위해 도입하되, 연안관리지역계획 운영성과를 토대로 육역의 기존계획과의 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</p>	<p>2006 ~2007</p>

현황 및 문제점	개선 정비방안	추진시기
<p>○ 시군구 지역계획 수립이 임의 규정으로 있어 실적 저조</p> <p>* 대상지자체 80개중 17개 수립</p>	<p>○ 시·군·구의 지역계획 수립을 의무화</p> <p>- 관할 연안의 관리정책의 방향 등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, 타법령의 연안이용협의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의무적으로 수립</p>	<p>2006 ~2007</p>
<p>□ 연안통합관리계획의 규범력 미흡</p> <p>○ 연안통합관리계획은 타 법률에서 정해진 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규범력이 미약</p>	<p>④ 다른 법률이나 계획에 대한 변경요청 권한 강화</p> <p>○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정책·계획·사업 등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 요청권을 강화(변경요청시 관계기관이 응하도록 보완)</p> <p>* 다만, 지역계획의 수립 등으로 여건이 성숙정도와 연계하여 중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방안</p>	<p>중장기 과제로 검토</p>

5. 공유수면매립법(해양수산부/연안계획과)

현황 및 문제점	개선 정비방안	추진시기
<p>□ 특별법에 의하여 의제된 매립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미흡</p> <p>○ 해수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기본계획, 매립면허와 관련하여 사후관리 감독을 시행할 수 있음</p> <p>- 매립기본계획 수립 고시이후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거쳐 변경, 폐지(법제8조)</p> <p>-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전에 공유수면의 상황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공익상 특히 필요시 면허 취소·변경 가능(매립법 제32조)</p>	<p>① 의제처리된 면허에 대한 사후관리 보완</p> <p>○ ‘산업입지법’등 특별법으로 의제된 매립의 경우에도 매립예정지 주변여건·해면이용상황 등 중대한 사정변경시 일반매립에 준하여 해수부장관의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절차를 보완</p> <p>* 해수부장관이 매립기본계획, 매립면허 의제처리 이후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직권취소(변경) 또는 주무 행정기관의 장에게 취소(변경)을 요청하는 방안 등(해수부가 관련부처와 면밀히 협의하여 반영)</p>	<p>2006 ~2007</p>

현황 및 문제점	개선 정비방안	추진시기
<p>□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 절차 미흡</p> <p>○ 매립기본계획 수립시 매립수요기관의 계획반영 요청을 중심으로 수립하고 있어 체계적인 절차 미흡 * 기초수요조사 등 미실시</p> <p>○ 매립기본계획 수립시 환경영향 등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 미흡</p> <p>○ 매립면허 이후 토지이용계획 등 실행에 대한 관리가 미흡</p>	<p>② 매립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·이행 절차의 보강</p> <p>○ 매립기본계획 수립시 해수부장관이 기초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함</p> <p>○ 매립 기본계획 수립시에 환경영향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</p> <p>* 기본계획 반영 요청시 주민, 환경단체 의견 제출 등</p> <p>* 매립기본계획 변경시에도 같이 적용</p> <p>○ 매립후 주기적으로 토지이용계획서의 이행내용 파악(점검)근거 신설</p>	<p>2006 ~2007</p>

6. 환경정책기본법(환경부)

현황 및 문제점	개선 정비방안	추진시기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토기본법과 환경계획간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 - 국토기본법제8조에서는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- 환경정책기본법(14조의5)은 개발계획·사업의 환경적 고려를 규정 	<p>①국가환경종합계획(법제 12조)의 수립주기 조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행 10년 → 20년 -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주기와 연계 * 환경부 의견 : 원칙적으로 추진하되, 국토기본법의 우선효 배제문제와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	증장기 과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사전 예방적 환경정책수단으로서의 협의대상을 확대하는 등 검토가 요구됨 * '행정계획'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포함하도록 환경정책기본법 개정('06.6시행예정) * 사전환경성 검토시 '환경부 업무편람'으로 환경계획을 고려하고 있으나, 규범력이 미흡 	<p>②사전환경성 검토제도를 활용하여 환경계획에 대한 사전적 고려 방안 강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시 환경계획과의 부합성 여부를 고려하도록 기준 마련 (환경부,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등 추진중) *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에 개발관련 행정계획을 포함하도록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중 - 사전환경성검토시 '환경계획 고려'를 검토하도록 함 (환경부,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중) 	2006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위·하위 환경계획간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 - 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환경종합계획(12조), 시도환경보전계획(14조의3), 시군구환경보전계획(14조의4) 등 상위 환경계획과 하위 환경계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	<p>③환경계획간의 유기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환경종합계획에 기초한 상·하 환경계획들이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마련 * "지역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"에 반영계획 (환경부 기추진) 	2006

7.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(환경부)

현황 및 문제점	개선 정비방안	추진시기
<p>□ 입지선정 주민대표 선정 절차 등 미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시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 규정하고 있으나(법제9조) ○ 실제 입지선정단계에서 주민대표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참여하는 주민대표의 선정기준이 없어 대표성·적격성 여부로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음 	<p>①입지선정위원회 참여 주민대표 선정기준 등 보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입지선정위원회에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주민대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대표 선정에 관한 기준 등을 보완 * 입지후보지 영향지역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	2006
<p>□ 입지타당성조사 공고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입지타당성 조사계획을 공고하도록 규정(법 제9조 제1항) ○ 입지타당성 조사계획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, 실제로 주민들이 공고된 내용을 쉽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음 	<p>② 입지타당성조사 공고방법의 다양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입지 타당성조사계획 공고내용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완 * 예컨대, 인터넷을 통하여 공고하는 방법등 고려 	2006

8. 전원개발촉진법(산업자원부)

현황 및 문제점	개선 정비방안	추진시기
<p>□ 전원개발 실시계획의 사정변경시 취소 근거 보완</p> <p>○ 사정변경시에 탄력적으로 이를 반영하는 절차 미흡</p> <p>- 실시계획 승인 이후 지역 전력수급 사정의 변경, 다른 계획과의 충돌, 지역주민과의 합의에 의한 사업 계획의 변경 등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실시계획을 취소할 경우 “변경 승인”절차를 적용하고 있음</p> <p>- 계획 변경의 개념에 취소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은 법률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취소의 근거를 명문화 할 필요성</p>	<p>① 실시계획의 취소에 대한 근거규정 보완</p> <p>- 실시계획의 변경의 개념에 계획자체의 취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철회(취소)의 근거를 명문화 할 필요성</p> <p>※개선방안(예시) : 법제5조(실시계획의 승인)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"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..." → "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(사업철회, 취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..."</p>	<p>2007 (향후법개정시반영)</p>

9.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에 관한 법률(가칭) 제정 (행정자치부)

현황 및 문제점	개선 정비방안	추진시기
<p>□ 해상경계 관련 분쟁의 빈발</p> <p>○ 지방자치법에 해상에서의 행정 구역 경계 관련 근거 미규정</p> <p>※ 지방자치법 제4조(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·분할할 때에는 법률로서 정한다.</p> <p>○ 해상경계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어 해상 경계 관할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간 분쟁·갈등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</p> <p>※ 분쟁건수 : 총 20건(시도간 9건, 시군구간 11건)</p> <p>○ 향후 해저자원 활용, 공유수면 매립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간에 유사한 분쟁이 더욱 늘어날 전망</p> <p>※ 평택-당진간 해상경계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과,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도를 해상경계의 기준으로 한다는 판결('04.9.23)</p>	<p>① 「지방자치법」 개정 추진</p> <p>○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바다를 포함한다는 명시규정 신설</p> <p>○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설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, 절차 등 해상경계에 관해서는 개별법에서 규정한다는 사항 신설</p> <p>② 「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에 관한 법률(가칭)」 제정 추진</p> <p>○ 해상경계 설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 등 마련</p> <p>○ 해상경계 표시방법 및 해상경계획정 절차 마련</p> <p>○ 해상경계 획정기구 설치·운영방안 마련</p> <p>○ 해상경계선 확정 후 해상경계변경 절차 및 분쟁조정방안 등</p> <p>③ 해상경계선(좌표값) 확정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 추진</p> <p>○ 확정된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선에 대한 좌표값(위·경도로 표시)을 해상경계법률 또는 시행령에 명시</p>	<p>2006</p> <p>2006</p> <p>2007 ~2008</p>